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501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2158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4.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8. 접수 제8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4.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4. 12. 접수 제8964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3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C에게 광업등록사무소 2021. 5. 27. 접수 제718호로 마친 가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카명1117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C는 위 법원에 위 각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2021. 4. 8.

이전에 위 각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C 내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C와 연대채무자인 D의 자산 여부도 판단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C의 처 P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았으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C의 사해행위여부와 관련하여 그 연대채무자인 D의 자산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연대보증 등 단순한 인적담보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채무에 관하여 D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채무의 변제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아니한 이상, C의 자력이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의 자산유무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1)

다음으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았는지 여부나 C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D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20. 7. 31.부터 2021. 5. 26.까지 합계 42,388,066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C 및 D이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합10193호[본소,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C 및 D을 상대로 위 법원 2020가합10209호로 반소(차용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2. 18. C 및 D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2) 이에 C 및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C 및 D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1나50462호),3) 다시 C 및 D이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나 D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가 C의 충청북도에 대한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본안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합10070호 사건에서 선정자 C를 포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정(현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1나51984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을 고려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가 투자한 돈으로 C나 D이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이 사건 가등락을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C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이 사건 가등락을 마쳐줌으로써 C 본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나 D이 영위하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송금한 날은 2020. 11. 19.인데,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그 이후인 2021. 4.경 내지 2021. 5.경 체결되었으므로(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후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꾸준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 4.경 내지 2021.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단지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C나 D이 그 사업의 갹생이나 계속적인 추진의 의도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고진홍, 판사 성찬용

1)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2) 1. 원고(반소피고)들(C 및 D, 이하 같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에게 244,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 Q이 2019. 3. 19. 작성한 2019년 증서 제14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42,388,066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275,745,628원 및 그중 244,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